

제407회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7월5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2)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10.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1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12.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1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1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26.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2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
3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상정된 안건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3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3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3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2) 3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3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3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3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3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3
10.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3
1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3
12.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3
1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3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 3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3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3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3
1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3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3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3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3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4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4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4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4
26.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4
2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	4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4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4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	4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	4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4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4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	4
3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4

(14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폐회중)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6)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81)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7)
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42)
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27)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53)
10.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73)
1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9)

12. 장애인평생교육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6)
1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1)
15.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1)
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1)
1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35)
1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96)
1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0)
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9)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39)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4)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09)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4)
2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2)
26.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27.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23)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7)
3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66)
3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51)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70)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40)
3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3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의사일정 제1항 심사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마련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입법 의도를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수의 학생 및 교사 희생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학교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4쪽입니다—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해석의 모호성도 방지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법안 개정 취지가 안전사고, 특히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걸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등 긴급구조활동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문구상으로 ‘다중운집 행사’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앞에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문구로 조정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 별 이견 없는데요.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현행법 27조의2 3항에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령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로 없던데요.

오늘 이 법률 개정안의 내용들을 대통령령에 적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에다가 자꾸 끼워 넣을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사실 저희가 이 안 논의할 때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종류를 법에 다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태원 참사처럼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들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일단은 저희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체계 상으로는 서동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쪽으로도 가능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고등교육법이니까 이러한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고등교육법에는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초등학교는 지금 이미 그 안이 반영이 돼 있고, 심폐소생술 이것도 지난번에 강화가 돼 있고요.

○서동용 위원 그게 법률에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법률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좀……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입니다.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교육 고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총 전체 안전교육에 대해서 연간 51시간을 실시하게 돼 있고 그중에 안전에 대한 분류마다 7대 표준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매년 2시간 하게 돼 있고요. 초·중등……

○서동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고등교육법에다가, 다중·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법에다 넣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찬성하신다는 입장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역시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이 법에 들어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법에는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대학,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중등처럼 고시나 또 7대 표준안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대학에서 학교의 장이 안전계획을 세워서 책임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에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기존의 27조의2 1항 같은 경우에는 위험의 유형을 예시하는 방식의 법조문이에요, 재난이나 안전, 감염병, 범죄. 그런데 1의2 개정안은 다수가 운집한다라는 행사의 특성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지금 대학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운집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주최하는 쪽은 굳이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사에 대한 간섭이라고 해서 갈등이 유발될 여지가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수가 운집한다라는 부분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체계처럼 ‘다수의 운집으로 위험하게 된 상황’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 자체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학교의 장이 수립하도록 한다면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 운집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학교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학교 내의 의견들을 들어 봐야, 청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 입장은 어떠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래서 저희 원안이 ‘다중 운집 행사 시’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다 보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학교 당국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대학교 연합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목적이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학교 축제 등,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것은 사실 학교 당국에서 연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행사 주체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학생하고 교직원, 그러니까 외부의 일반인들이 일시적으로 막 몰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사실은 학교 당국에서 그 장소가 그 안에서 벌어진다면 적절히 판단하지만 예측 가능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적어도 안전 책임 주체인 학교 당국에서 미리 기본방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자 문구를 그렇게 확정했다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구요.

행사 주체도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밖에서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집회·시위라든지 일반적인 지자체의 안전관리 체계 그 안에서 다뤄져야 되지 학교 당국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으라고 하는 것은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보여서 그렇게 구체화를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이 학교 축제 등으로 예시를 넣고 그다음에 구성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학생 및 교직원 다수로 해서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계획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보려는 노력은 있어 보이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서, 이 조문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지는 그런 근거 조항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실무자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사 종류가 워낙 다양할 수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돌발적인 행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되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다수가 운집하는 학교 행사는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제일 저희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축제 그다음에 학교 체육 행사 그다음에 입학식, 졸업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대해서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학교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보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부분을 기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회하고 시위 같은 경우는 소관 기관이라고 하면 아마 경찰청 쪽에서도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 단위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재난 안전법 관련해서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학교안전계획 예시 나갈 때 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예시안을 보내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정부 수정의견은 학교 일정표에 따른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서 학교의 장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집시법이나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학교 당국에 안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안내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권은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법의 개정으로 집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다중운집 행사도 학교 안에서 열리면 학교의 장도 공동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책임이 있는 걸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부교육안전정책과장 최화식 책임은 행사 관련한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런 행사가 열릴 때, 지역 축제가 학교에서 열릴 때는 시청에서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지역 축제 차원에서 얼마큼 안전관리를 하는지 확인 정도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행안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개정안의 취지대로 하면 대학 당국이나 대학 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준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는 그 취지가, 범위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이태규 위원 거기까지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총학생회나 다른 동아리연합회나 이렇게 학내 문제로 집회를 열고 이랬을 적에 거기다 다중이 운집하잖아요. 그때 그러면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대학 당국이 어떤 지침이나 뭐를 제시하게 되면 그걸 집회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걸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의 안전사고는 어떻게 할 거냐, 저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지금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거리에서 시위 하잖아요, 집회하고. 그 사람들 거리에서 그것 하다가 만약에 안전사고 거기서 났다, 그러면 그것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거리에서 데모를 해요.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 와중에 안전사고가 났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중운집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어떤 제재를 어디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회 허가만 나면 그냥 자유롭게 자기를 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공간, 캠퍼스라는 공간도 그것이 가능한 공간이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총학생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대학 당국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권은희 위원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고 그때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거리에서 다 데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만약에 데모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건 또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 연결이 되는 문제 같아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 본부나 당국의 책임하에 주관하는 그런 다중운집 행사, 그러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들 학교의 허락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바깥의 영역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굳이 대학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일반 거리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하여간 대학 당국이나 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는 성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개정안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그러니까 가상해서 대학이 주관하지 않더라도 집회·시위나 일반적인 행사가 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 그걸 한 번 더 따져 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이기에 때문에 학교에서 주관하고 학교에서 책임질 행사에 한해서 안전관리계획도 세우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도 학교 당국에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클리어하게 확인 절차를 거쳐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민정 위원** 저는 학생하고 교직원, 이런 정부 수정안이 나와서 이것은 어쨌든 학교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시한 걸로 하는 것에 별 이견은 없었거든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을 수용으로 해서 의결할까요?

○**이태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법안

의……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학교라는 주체를 인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태규 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의 주관과 책임 기관이 명확하게 대학 당국이, 대학 본부가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이 법의 개정의 취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영호**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안전계획을 받는다라는 것은 안전 책임을 최종적으로는 진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지금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시와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시 주최자 측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계획을 집회 신고를 받을 때 경찰이 받고 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것을 주최자 측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게 미흡할 시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집회 신고와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미흡할 때는 집회와 관련된 행사 내용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최 측에 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책임 소재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이 규정이 법 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 당국에서는 이렇게 다중 운집하는 행사에 대해서 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면 그 행사의 주최자가 누구이건 그 주최자와 공동으로 안전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법적 지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권은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생각을 해 볼 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주최 측하고의 이견이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최 측과 관련해서 주최 측이 안전관리를, 행사에 있어서 학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 요구나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을 제출했을 때 학교 당국이 이를 보완할 만한 어떤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만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법체계상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의 의도는 어쨌거나 학교 당국이 학생회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든 학교 당국이 주최를 하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를 하는 그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학교에서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안전관리계획도 세우고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우려하신 집회 시위라든지 지자체 행사 이런 쪽하고도 살펴보고 문구를 조금 더 명확히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위원들께서 몇 가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영해서요 문구를 다시 정해서 법안소위 마지막 부분까지…… 그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소위원장 김영호 계속 심사해서 다음번 법안소위 때 그때 한번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다음번 할 때…… 예.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강득구 의원과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3쪽입니다.

교육부는 일부 수정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4쪽을 봐 주시면 의원님 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칸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일단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등록제로 조금은 저희가 정식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법적인 틀에서 자율권을 부여한 영역이고 여기 자료 2쪽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에 한 215개 기관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업무 자체가 지자체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자치사무에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의 주체를 규정을 할 때도 국가 및 지자체가 아니고 지자체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원하는 절차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만약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재정 지원만 규정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도 같이 이루어져야 그 지원된 재원에 대한 책무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위원 저는 재정 지원을 하면 지도·감독도 일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에는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정규학교가 아닌 학교를 상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대안교육전문기관인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국가도 명확하게 주체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업무들을 책임을 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면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책임을 그냥 완전히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과 감독의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 관할에서 지자체, 교육청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을 하고 밖에서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나 지자체의 어떤 지원 대상이지요. 그래서 법령에도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중앙부처로 따지면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파악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법안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상정을 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입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런데 그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이라 하더라도 성질이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할 때는 시·도교육감이 자치사무로서 그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그 틀 내에서 지원하는 범위나 절차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무성이 법적으로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려면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조례로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도 일정 부분은 교육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저희가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개별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대안교육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작년인가, 작년에 통과시켰고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제조건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일부가 교육기관 형태로 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거고 그게 교육적인 어떤 의미,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으로 편입된 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교육적인 기능을 인정하는 이런 법안이 사실 이미 통과돼서 발효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지자체……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건 결국 교육기관의,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보고 교육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동의한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가도 일정하게, 교육부지요. 여가부에서 실태조사하고 있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정책하고 다르게 대안교육기관에 들어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때의 국가는 사실 교육부가 일정하게 교육청과 역할을 나누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서동용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21년 1월 대안교육기관법이 제

정될 당시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자체와 국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책무성을 띠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시에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굳이 경비 지원 주체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건 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 전국에 215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조례가 달라서 지원 유형, 지원 예산도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과 등록제에 대한 교육기관의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경희·강득구 두 의원의 개정안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두 분의 개정안이 자구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조정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저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 교육이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초·중등 교육은 지금 어디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전체적인 틀은 교육부가 컨트롤하고 또 모니터링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자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시도 지자체와 또 시도에 있는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수용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안에 동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등교육은 보통 보니까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담당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초등 또는 중등 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중등 교육은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해당 시도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것도 입장 차이가 있으시네요.

○권은희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대안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회와 교육청이 충돌하는 사례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있었고 광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 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일반 지자체, 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사무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기관이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사무 자체가 교육감의 사무가 아니냐 해서. 그러면 재정 지원도 교육감이 해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감이 등록과 인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자체는 지금 관련된 지원 조례를 폐기하면서까지 지원을 없애는 그런 수순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국가를 넣느니 안 넣느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책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 관리, 감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법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런 싸우고 있는, 폐지하려고 하는 이 단체를 명목으로 그냥 넣는 것보다 아예 교육감으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등록부터 인가부터 그리고 관리 감독 그리고 운영 지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또 거기 종사자들에게 가장 책임감 있는 그런 법체계일 것 같은데 교육부 의견은 어떠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도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그 안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게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없고 자율이고요 그다음에 학력 인정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의무교육 단계인 학생이 가게 되면 원칙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면 처분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유예를,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유예를 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학교라는 명칭도 대안교육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이

렇게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을 그냥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치지 않고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버퍼링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순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 정식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범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시·도교육감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지만 자율권을 가지지만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앞부분에 선언적으로 국가·지자체가 시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무성을 가지고 하지만 국가는 전체 틀 내에서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그런 쪽의 책무를 지어야 될 거고 실제로 기관 운영의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확실하게 해 놓고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을 그 한도 내에서 가져가는 게 맞고 구체적인 것은 지역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지금 대안학교는 일반 초중고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가요? 대안학교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재정수요에 대안학교를 잡아서 내려보내기 때문에요. 이제……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학교라는 것은 학력 인정을 해 주는 학교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 예.

○이태규 위원 대안교육기관은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고, 그렇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장 정윤경 예.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래서 저도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그다음에 지도·감독 문제 이것은 교육청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법을 다루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안교육기관은 어쨌든 학교 밖의 학교인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지금.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이태규 위원** 그래서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게 우리 아이들을 모두 제도권 학교 안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제도권 바깥에 있는 애들은요 실질적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재능이나 천재성을 제도권 학교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애들도 저는 다 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제도권 안의 초중고랑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력은 인정을 안 받지만 1년을 공부하든 2년을 공부하든 해서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건설한 사회인으로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대학을 가든지 이런 자기 길들을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는 정책으로 또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요.

○**이태규 위원** 제도권 안의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나 바깥에 다니는 애들이나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일단 정부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3조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넣은 것도 이태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쪽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거고, 또 국가의 책무는 사실은 그런 트렌드의 변화나 새로운 수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또 홈스쿨링 같은 것도 일부에서는 제도권에서 지원

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봐 가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책도 마련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저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기관이 시·도교육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책임하에 운영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지도·감독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법을 조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대신 국가의 거기에 대한 정책 책무성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여당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강득구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영호**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차관께서는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할 거냐, 지방교육청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조례로 답을 거냐,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 후자라는 입장인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무 자체가 자치사무니까 교육감의 책무로 해 놓고 구체적인 것을 담은 것은 조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제가 경기도 정무부지사로서 한 2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31개 시군 간의 격차였습니다. 복지도 31개 시군 간의 격차가 심했고요. 예를 들면 특히 장애인 관련된 정책이나 그리고 또 국가사무인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중에서 여성 성폭력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사무로 해야 될 부분과 예를 들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는 입장에서 지방사무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는 게 제가 이런 법안들을 다룰 때 기준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차관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면 동의하지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은, 단체장의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두는 단체장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단체장도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입장에서 한편 동의가 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큰 틀에서 국가가 일정 정도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큰 틀의 방향성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동용 위원 계속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야당 위원님들은……

○이태규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를 지원해야 된다는 데 공감할, 여야가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심사로 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처리를……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이렇게 조정이 되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서요.

○강민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 문언상 보면 정경희 의원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게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 지휘 관할의 교육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거나 이것을 봉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국가의 운영 지원 부분에서만 막 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일관되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정경희 의원안이나 강득구 의원안이나 공통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다 책임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그리고 하위의 어떤 구체적인, 또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 기억에는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게 선언적인 어떤 것만 끝났고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여기는 지방정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태규 위원님처럼 일반 제도권 학교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사회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길을 터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심사로 넘기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 말씀은 서동용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 거지요?

○서동용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고.

조경태 위원님 발언하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오늘 합의 처리하려고 그러면 조금씩 의견을 좁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저는 계속 심의하는 게,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안학교가 이백열다섯 군데가 있다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실태조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일반 공교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처럼 엄격하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엄격하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을 저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각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수용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21개도 아니고 215개를 갖다가 교육부에서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하려면 그 역시 또 인력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그것을 나서서 해야 됩니까?

또 항상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뭐니까? 자치 아닙니까, 행정의 자치, 교육의 자치? 이것은 왜 자치를 강요 안 합니까?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청이 제가 쪽 보니까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국가’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도 봤을 때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대안교육기관을 감독하고 또 지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여기는 예산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예산을 줄 수 있

는 거지 제대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준다,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 대안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육위에서 먼저 이백열다섯 군데의 대안교육기관이 제대로 365일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은 실태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교육부에서 이백열다섯 군데 있잖아요, 대안교육기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본인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러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있는 초·중·등 교육을 다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왜 대안학교만 교육부가…… 국가가 하자는 것은 결국 교육부가 또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백열다섯 군데의 대안교육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재작년, 2021년 1월 달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12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법의 적용이 1년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법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조항까지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현황도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지원하자’ 이렇게 가는 것은 물론 옳지 않지만 이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 자료를 조경태 위원님께서 좀 받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심사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국가의…… 이게 마치 지방자치와 모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자체의 교육청에다가 등록하고 또 교육청이 정부안처럼 관리·감독하는 그런 책임까지 부과가 되고 실질적인 운영에서 지자체, 지방교육자치가 이 부분을 실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국가도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215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안에서도 31개 지역별 편차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의 편차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같이해 줄 의무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는 게 맞다, 그게 절대로 위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도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것 합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래서……

○**조경태 위원** 저 조금만……

○**소위원장 김영호** 지금 조경태 위원님도 발언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간사님 먼저 해 주시지요.

○**이태규 위원** 지금 지원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

정부의 수정의견을 보면 저는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 외에 별도로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책 수립·시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돈은 시·도청에서 내지만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될 국가의 책무가 이미 3조에 정부 수정안대로 한다는 정부의 책무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정부 수정의견에 이렇게 쪽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또 필요한 협업 체계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규정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소위원장 김영호**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되게 우려가 크게 있는 게 지금 현재 조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조례가 다릅니다, 지원 유형도 다르고 지원 예산도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뭔가 국가가 나서서 통일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줘야 될 텐데요. 시책은 수립하고 뛰는 하고 뛰는 하고 하면서 예산 지원은 국가를 쫓 빼고 나면 예산에 관한 국가의 개입 여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면 시도별로 차등적 예산 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라도 국가의 책무가 분명히 강조돼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인 것이어서요.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정부 수정의견만으로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조경태 위원 계속 심사 가야 된다니까.

○권은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놓고 말고가 전혀 무의미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가는 이게 자치사무, 자치교육으로 넘어간 영역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 근거가 아무리 있어도 통일적인 어떤 지침이나 지시를 줄 수도 없고, 준다 한들 지자체가 그것에 귀속되지도 않는 그런 무의미한 부분이고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의 제정으로 본인들의 사무가 아니라고 기존의 지원 조례도 폐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를 넣어놔 봤자, 법률에 그것이 근거가 있어 봤자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있는 조례도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 5조의2의 정부 수정의견의 주어를 ‘지방자치단체는’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게 현장에서 필요한 거고요.

운영경비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게 맞고 운영경비 외에 대안교육기관은 다니는 학생들의 교재비나 급식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역할이고요. 지자체가 그와 관

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줄기를 타서 법을 체계화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아무리 넣어 봤자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걸 정리해 주시지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 2항, 3항에 1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는 이것은 오늘은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심사로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득구 위원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계속 심사로 판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4항입니다.

관할청으로 하여금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는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대체토론 부분 보시면 이런 학교 보건에 필요한 결정은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보건법에서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휴업 등을 위해서 해당 학교가 관할청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에 휴업 등의 조치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작성·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각 1학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학교의 장이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 관련된 자료가 제대로 저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일반검진을 주관하고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주관하면서 그 실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사후관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교육부는 위탁 주체를 현재와 같이 학교의 장으로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참고 사항을 보시면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운 먼저 4항에 대해서 의견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는데요.

감염병으로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생하면 질병관리청하고…… 관할청이라고 하면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될 텐데요, 감염병이라는 게 신속하게 판단해서 지역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7개 교육청이 교육청별로 질병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시간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좀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의견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한 감염병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학교마다 관할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또 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개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다 생각이 되고요.

5항에 대해서는 먼저 초등학교 1·4학년 그다음에 중1, 고1에 대해서 건강검사를 지금 다 학교장이 그냥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건강검사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하기로 보다는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다른 입법을 보더라도 학교의 장이 규정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조항 중에 건보 위탁하는 것에 있어서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탁하도록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6쪽에 안 18조 보면 학생 건강검사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지원 근거는 그대로, 이 안에서 제시된 대로 예산 지원 근거가 있어야 소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부터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 4항 같은 경우는 질병청을 이렇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의무조항을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소규모 학교하고 도시에 있는 밀집된 학교하고 굉장히 이런 상황들이 달라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외곽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은 사실 대면 수업을 한 데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한 신속한 결정에다가 각 학교가 처한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좀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인 거지요?

○강민정 위원 예. 질병청을 반드시 거쳐서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도 되게 경직성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그런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확일적 기준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 의견과 비슷하고요.

○서동용 위원 차관님, 지금 감염병 예방법 제 50조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청과의 협의 조항은 이미 법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취지에서 이미 이견 입법 목적들이 다 달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민정 위원 그래요?

○서동용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이번 코로나를 뺀 코로나 외의 감염병 중에 교육부가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휴업·휴교를 명령한 사례 있었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면서 등교 연기라든가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중대본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갔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는 그렇게 한 걸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 이전에는 없었다고……

○서동용 위원 그 외의 감염병 사례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그전에 메르스에 대응할 때도 지금 체계와 비슷하게끔……

○서동용 위원 그때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존 체계에서 질병청과 협의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휴교·휴업에 대한 명령을 내려왔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지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신종 감염병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될 건데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초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 그다음에 또 방역 당국의 판단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동용 위원 특별히 개선할 부분은 없어요? 이제 충분히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대대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용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특별한……

○강득구 위원 (손을 듭)

이 부분은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 경기도의 메르스 상황에서 소위 중대본 다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았지요. 그런데 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속한 대응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마다 다 상황들이 다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랑 담당 부지사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융통성들을 부러 갖고 개별 시군들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존중하니까 훨씬 더 일들이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이랑 그리고 개별 사항에 맞는 융통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교육부, 정부 측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여당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 더 없으시니까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 보류하고요.

○이태규 위원 이것은 더 논의 안 해도 되지, 뭐.

○권은희 위원 폐기……

○소위원장 김영호 일단은 보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폐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호 일단 보류지만 폐기나 보류냐는 조금 이따 판단을 할게요.

○권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일단 저는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 체계적인 건강검진 정보 관리를 위해서 정보 관리 주체를 건보로 하고 검진을 건보에 위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행 학교보건법상 교직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에 따른,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검진

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권은희 위원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는 김예지 의원안하고 현행 지금 신현영 의원님 개정안하고 비교했을 때 신현영 의원님이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의 핵심 취지는 기존에 우리가 처리했던 김예지 의원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됐나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사실상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학교의 장이 공단에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이 법안이 의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이 법안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 교육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학교보건법 2개를 병합 심사할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아닙니다.

○권은희 위원 그것은 안 되잖아요. 폐기해 버리고?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그것은, 먼저 간 것은 그냥 놔두고요. 법사위에서 그냥 머무르고……

○권은희 위원 보류하고 이것을 대안으로……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이것으로 의결을…… 대안이 아니고 이 안을 그냥 의결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두 안을 묶을 권한이 없거든요.

○권은희 위원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먼저 간 법안을 그냥 묵혀 두고……

○권은희 위원 하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나중에 의결한 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은희 위원 그러면 법사위로 가 있는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이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낫습니다. 깔끔하긴 한데 번안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번안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서 이것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규 위원 아니, 복잡해도 깔끔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권은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을 순차적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깔끔한 것은……

○권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통일을 해 주는 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간사하고 소위원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일단 이것은 좀 넘기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시지요.

그러면 5항은 저희끼리 논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서동용 위원 방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위원장하고 교육위원장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 뒀 버리면 김예지 의원안은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영원히 묻히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지가 비슷하다면 아예 바로 가져와서 병합 심리를 해서 충돌이 없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시면 제5항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조경태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고요. 개정안은 법률 용어인 ‘준수하다’를 우리말인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항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범주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입니다.

다음, 8항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부분을 죽 보시면 다양한 기관과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 중간 부분 보시면 정무위원회에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교육이라는 명칭을 도입을 하면서 관련 규정까지, 정의 규정까지 도입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금융교육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융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먼저 6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7항은 전문위원 설명 주셨듯이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살예방법에 이미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항에 대해서도 경제교육지원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이미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이미 경제·금융교육이 범교과 학습주제로 해서 통합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어서 입법 실익이 없어서 신중 검토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권은희 위원 정부 의견 수용합니다.

○서동용 위원 저는 먼저 6항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들의 한자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기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저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동용 위원 그것을 예전에도 말입니다. 각 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문위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 왔었고 또 제가 듣기로는 과거 의장님이 그런 지시를 한번 하신 걸로도 아는데요. 그게 지금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예, 저희는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 한테요. 아직까지 저희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것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까? 현재 시스템상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그게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기존 자료를 뒤지고 뒤지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한테요. 그리고 그 사항이 지금 의사일정 6항하고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 한자어나 일상용어가 아닌 용어들을 일상용어로 바꾸자 이런 주장들이나 또는 그동안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법제처 쪽에서 관련 작업을 해서 옛날 일본식 용어 같은 것들, 변경이 필요한 용어들을 변경하는 법안이 많이 제출이 됐었고요. 상당히 의결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은 그런 데서 제외했던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교육위원회는 기록이 없고요.

○서동용 위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며를 지키며로…… 지금 현재 이 법률에서 고치는 게 일반적으로 준수하다라는 말이 지키다라는 의미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적 용어로서 정확하게 되는지를 제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개별 개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개정안을 낼 게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때 국회의장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내셨으니까요. 그것은 위원회별이 아니라 사실 국회 차원에서 전 상임위가 자구 수정이나 그런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조경태 위원님,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조경태 위원 참고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자로 된 것을 보면요, ‘준수하다’가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친구 얼굴 참 준수하네’ 할 때. 그래서 이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자 표기를 한 것하고도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유념해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 친구 외모가, 풍채가 빼어나다’ 또는 ‘재주가 뛰어나다’ 이럴 때 ‘준수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준수하다’라는 뜻은 ‘지키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보다 명확한 표현이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저도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걸 한데 모아서 이렇게 죽 하면 좋은데 사실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라도 고쳐야지요.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제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변제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갚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변제하다’ 대신 법률 용어를 ‘갚다’라고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즉 관행화돼서 쓰여지고 있는 ‘변제하다’라는 단어를

‘갚다’라는 용어로 바꾸는 데 따른 문제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준수하다가 두 가지 의미는 있지만 이 문장에서 준수하다는 지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것은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법적인 용어를, 관행화된 법적 용어를 바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6항에 대해서는 한자 표시를 한글로 전환시키자는 취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지금도 아마 이 비슷한 취지의 입법이 다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동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서동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걸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이렇게 계속 이르고 있는데요.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게 국회의장이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래도 관행돼 온 것처럼 찾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한글 표기로……

○조경태 위원 보물찾기했잖아요.

○서동용 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것을 ‘준수하며’를 ‘지키며’로 바꾸는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다니까요.

○조경태 위원 지키다가 맞지요. ‘준수하다’ 하면 지금 말씀대로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영호 아까 변제하다, 갚다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법조인이다 보니까……

○서동용 위원 제 얘기할 때 안 들으셨어요.

○조경태 위원 한글을 써야지요, 한글을. 한글이 있다면요.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 이야기할 때 들으셨어야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실 텐데……

○조경태 위원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동용 위원 안 들으시더군요, 뭘.

○조경태 위원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소위원장 김영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6항……

○이태규 위원 여기 자료의 법제실이 나오는 부분에서 ‘준수하다, 지키다’가 같이 쓰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준수’라는 부분은 어쨌든 제

한자 표기가 가능하고 ‘지키다’는 순우리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조경태 위원님, 개정안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소위원장 김영호 권은희 위원님도 법조인이시니까……

○이태규 위원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구나 수정해 가지고 계속 단일 법안 개정을 내잖아요.

○서동용 위원 숫자처럼.

○이태규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법제처가 일제 한번 짝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다 모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의원 개별 입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소위원장 김영호 이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더 고쳐 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서……

서동용 위원님, 제6항은 동의해 주시지요.

○이태규 위원 그 대신에 이걸 일제 정비하는 것을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사업 쪽으로 잡아 가지고 한번 추진해……

○소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을 할게요, 우리 의견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7항, 8항은 다들 신중검토 입장인니까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7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의견이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이게 교육기본법이잖아요. 정부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살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목적, 즉 당사자에 대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타인에 대한 생명존중입니다, 자신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최근에 정유정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초·중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아주 무지마치하게 돌려차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떤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사회가 생명존중의 의식이 많이 흐릿해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김영호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몇 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득구 위원 여기 교육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교육에 자살예방이랑 생명존중교육이 포함돼 있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그리고 금융교육 관련된 부분도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들어가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학교에 창체 시간이 있잖아요, 창의재량 시간. 창의재량 시간이 있지요, 학교에?

○교육부차관 장상윤 창체, 창의적 체험……

○강득구 위원 창의적 체험 시간이 있지요. 학교 수업 시수에 창체 시간이 있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있는데 사실 이런 교육기본법에 금융교육 또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하다 보니까 창의체험 시간이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그런 지경이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소연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담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강득구 위원 그렇지 않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어쨌거나 범교육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창체 시간 포함해서 교육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게 가장 교육적이라라는 게 기본적인 교사들의 인식이고요. 저는 그 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권은희 위원 똑같습니다. 궁금한 게……

○소위원장 김영호 예, 한 가지 해 보세요.

○이태규 위원 다음에 해요, 다음에.

○권은희 위원 다음에……

○소위원장 김영호 의사결정 제6항은 위원님들

께서 다 합의해 주셔서 의결을 하고요. 7항, 8항은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1시간 반이 흘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15분 할까요? 15분. 그러면 3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만 할게요.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시 45분에 법안소위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태규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지난 소위에서 세 법안의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지난 소위 논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에서 관련 단체 의견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17개 시도 그다음에 8개 고등교육기관협의회, 6개 고등교육기관노동조합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실시했고요. 그중에 7개 단체가 의견을 저희한테 주어서 그 내용은 각각 관련 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난번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쟁점이 있는 부분이 해산장려금하고 관련된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소위에서 논의를 진척을 시켜 주시면 그 논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대체로는 크리티컬(critical)하게 쟁점이 갈리는 게 없어서 정부안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저는 우리 대학이,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이 거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뭔가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재위가 아닌 이상 대학교라고 하는 고등교육기관에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3개 법안이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 재정 위기 상황에, 재정상의 상황 변수만을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말은 구조개선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해산 장려 혹은 해산 지원 법안,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정말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으로 대학이 양산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꾸로 또 너무 쉽게 이것을 단순히 재정 상황만을 가지고, 교육기관인데 재정 상황만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그것도 여기 보면 가난하면 망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교육위에서 고민할 때는 절대로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관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려워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몇 해가 되기는 했지만 도대체 우리 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이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나 이런 것이라도 교육부나 우리 사회가 제시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구조개선이 되도록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세 법은 그런 점에서 이것을 이 상태로 놓고 뭔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그 절박함은 알지만 저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또 이게 앞으로 향후 우리 고등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역사적 과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대표발의하신 이태규 간사님.

○이태규 위원 지금 사실 사립대 구조개선이라는 게 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방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 위기, 지방 소멸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대학이 경영을 잘못해서 어떤 위기에 봉착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학령인구의 급격한 급감 현상 이걸 지금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대학도 여기서 비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이 없는데 대학이 무슨 수로 이걸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이 계속해서 학생이 없는데 많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떤 문제점, 부담을 다 떠안고 계속해서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고 저는 유지할 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대학이나 또는 위기에 처한 대학과 조금 더 나은 대학들이 통폐합을 할 경우에 그것을 지원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도저히 이제 대학으로서 기능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면 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이나 다른 법인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지역사회에 결합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 이것이 저는 그 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적에 대학도 살고 또 대학이 속해 있는 지역도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미 지방사립대들이 신입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엇그저께 바로 나타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사립대학교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 전부터 정부가 또 정치권이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 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그전에 있다가 계속 폐기됐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권이나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사실 설립자들이 지금 대학이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내가 내 재산을 여기에 투자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상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지분을 온전히 전부 다, 만약에 청산 후에 나머지 자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

서든지 학교의 청산이나 폐교나 이런 작업을 안하고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구조개선이나 청산이나 기능전환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수월하게 도와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유인 효과나 이런 걸 줌으로써 정리할 대학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법안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대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다소간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좁혀서라도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만난 사립대학교 총장님들이나 법인 관계자분들이 다 이 법안을 하루속히 빨리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만큼 현장에서는 절실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구조개선 지원 이런 부분이 늦춰질수록 그 부담은 다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하루속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김영호 예,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기존 법령이 소위 말하는 좀 전에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학 준칙주의가 적용된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포함해서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대학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급성에 맞게 법안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인을 청산했을 때 뭔가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태규 의원님 안과제 안은 어쨌거나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경희 의원님 안은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큰 차이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해산장려금이라는 부분은 일부 사립대학의 나름대로 요구일 수 있지만 큰 틀의 사회적 공감이나, 예를 들면 어쨌거나 사학이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랑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사회적인 공감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태규 위원님이나 제가 한 얘기를 통해서 적절한 차선책, 접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작년에 25만이 무너진 것은 앞으로 한 15년, 17년 후면 이미 결정된 사실이고요. 지금 대학 입학 정원이 46만인데 벌써 고3은 한 44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그건 앞으로 다가올 게 뻔한 사실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글로컬대학 신청을 받으면서 108개 대학이 혁신계획을 냈는데 상당수 대학이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들을 과감하게 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에서는 이미 학령인구 감소나 이런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꼭 우리가 강제로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진단을 해서 회생을 할 건지 또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뭔가 다운사이징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건지 또 안 됐을 때 해산을 할 건지 여러 가지 루트가 다 제시가 돼 있어서 그런 옵션을 제도적으로 빨리 제시를 해 줘야 이런 대학들의 움직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산장려금 방법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시다 보면 정부 의견도 있지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득구 위원** 제가 이 법안을 준비할 때 폐교가 있는 지역의 단체장 되는 분이 왔습니다. 이 분이 하는 얘기가 폐교가 되면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황폐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의견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세 법안 중에 유일하게 제시하신 특별지원지역 같은 것을 지정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교가 되더라도 뭔가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기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협력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강득구 위원** 정리하면 어쨌거나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라도 좀 더 제대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사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폐교로 인한 그 지역의 황폐화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그 지역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공감하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아까 야당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장애인평생교육 법안은 양당에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평행적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국회 21대 후반기에 의결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들도, 저와 여당 간사님도 따로 만나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상대방 측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타협점을 잘 찾아내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차관님 경영위기대학 리스트 갖고 계시지요, 저한테 주셨는데?

○**교육부차관 장상윤** 경영위기대학을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에서 평가한 그걸로는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이게 21년 결산 기준으로 14개 대학, 전문대학 18개, 총 32개. 이렇게 선정된 경영위기대학 선정 근거가 뭐고 이걸 선정함에 있어서 시뮬레이션해 본 자료는 뭐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선정 근거는

저희가 대학의 결산 정보만을 가지고 운영손실, 체불임금 유무 등의 정량지표를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진단해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모션이 고요.

○서동용 위원 그렇게 근거로 삼은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서동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앞서 교육부의 설명, 즉 경영위기대학과 관련해서 구조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퇴직금 지급이나 학생 편입학 지원금 같은 지원이 더 어려워지니까 적극적인 조기 해산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그 말을 다 종합하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데는 전부 폐교해야 되는 대학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경영위기가 왔긴 왔지만 법인이 의지가 있고 또 충분히 어떤 경영개선 조치를 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서동용 위원 그러면 차관님, 경영위기대학 중에 적극적인 조기 해산 유인책이 필요한 대학은 몇 군데입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을……

○서동용 위원 그것은 분석 따로 안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것도 분석을 안 하시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영위기대학 중에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대학 몇 곳입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지금 현재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일반대학은 4개 교고요, 전문대학은 1개교입니다. 일반대학 기준으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4개 대학 중에 한 2개교 정도가 되는 걸로……

○서동용 위원 전문대학은 경영위기대학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전문대학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시이사는 교육부가 위기 상태인 사립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를 정상화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런데 경영위기대학 중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은 경영위기대학으로서 폐교로 가야 되는 대학입니까, 아니면 임시이사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에 맞춰 학교를 정상화해야 하는 학교입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우선은 정상화가 목적이지요.

○서동용 위원 정상화가 목적입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그러면 정상화가 목적인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게 현장의 불만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대학들 중의 일부가 경영위기대학 리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일반대학 4개 중에 2개가 경영위기대학 리스트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대학들은 폐교 수준으로 가야 되는 대학입니까, 살릴 수 있는 대학입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대학 기준으로 2개 대학인데요, 2개 대학 중에 1개 대학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 앞서서 빨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거친 대학이고요. 1개 대학은 현재 상황이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학입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정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위기대학들을 어떻게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러프한 계획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학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릴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폐교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해서 이 법들이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이 악용되고 법이 고등교육환경을 더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는 것이고 저도 그

런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경영위기대학 리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부채가 200억을 초과하는 대학 7개 중에 자산이 300~500억 사이가 3개, 500~1000억 사이가 3개, 1000억 초과가 1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자산이 1000억이 넘는 대학은 재적 학생만 5000명 이상이고 교원수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왜 경영위기대학이요? 경영위기대학 리스트를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그 중에 이런 대학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영위기대학이라고 보세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일단은 그 학교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당장은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못 해서 학생 충원율이라든가 등록률이 적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실제 그 대학이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교육용 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땅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동용 위원 잘 설명은 안 됩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부채가 다 합쳐서 50억도 안 되는 학교 여덟 곳이 있어요. 그중에 학생수가 100명 이하 자산이 100억 이하인 학교도 있지만 학생수가 1000~2000명 사이고 자산이 300~500억 사이인 대학도 있어요. 이런 대학이 학생수는 1000~2000명이고 자산은 300~500억 사이인데 부채는 50억도 안 되더라 말입니다. 이게 왜 경영위기대학이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지금 당장의 부채는 없지만 체불임금이 발생한 부분이, 저희가 경영위기대학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동용 위원 50억 원도 안 되는 이 부채 속에 체불임금은 빠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그렇습니다.

○서동용 위원 자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부채를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경영위기 대학으로 넣었을까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일단은 저희

가…… 여기서 재산이 높은 부분은 교육용 기본 재산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교육용 기본 재산은 쉽게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무리 많아 하더라도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때 교육용 기본 재산을 바로 팔아서 체불 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신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일단 어느 정도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서동용 위원 교육부가 이 구조개혁법을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필요성을 공감할 만큼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들 많이 하시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산은 사실 자신들이 내놓은 재산은 아주 적고 대부분 등록금하고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돼서 형성된 재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립학교 법인들은 자기 재산이라고 해요, 내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종잣돈은 자기들이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이 증식되어 가는 대부분의 과정들은 등록금하고 정부예산으로 채워진 건데 이게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해산해서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기본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법인이 학교를 설립만 하고 나서 재정 기여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이건 대부분 지적이 돼 있어요. 지난 공청회 때 자료들을 보면 2003년 대비해서 2021년에 토지와 건물 자산이 증가한 264개 대학 중의 절반 가량인 127개 대학에서 지난 18년간 재단 전입금이 0원, 한 푼도 없었던 데들이 많아요.

왜 이게 사립학교의 재산일까요, 이런 데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사립학교의 재산을 법인 소유인 걸로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 생각의 기본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요.

강득구 의원님 안하고 이태규 의원님 안이 잔여

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요.

학교법인이 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학교법인이 스스로 해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해산하면 잔여재산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사립학교법 35조 1항은 정관으로 정한 바대로 하되 다만 그게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귀속자가 그렇게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립학교법 35조 1항의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일정한 조건하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하면 우리가 굳이 구조개혁법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사립학교법 가지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던 대로 사립학교법을 놔두고 구조개혁법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정말로 이걸 재산을 해산을 해서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거나 또는 제4조인가요? 횡령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교육부로부터 복귀 명령인가 하여튼 그 명령을 받고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학진흥재단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재산 이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일부라도 가져가게 해 주는 것, 이것밖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려우면 자기들이 스스로 해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그게 다만 현 사립학교법의 귀속 주체에 대한 한정이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서 조금 넓혀 주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요. 이 법을 놔두고 굳이 구조개혁법을 만드는 이유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터 잡아서 오히려 사립학교의 재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가져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위원님, 아까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사립학교의 공공성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고 국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공정한 거냐, 저희도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사립학교는 특성상 설립하고 그 학교를 운

영할 때 최초에 본인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선의로 투자가 돼 가지고 결국은 운영을 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온전하게 있는 재산 전체가 다 국가의 것이다. 또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당연히 여러 가지 해산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어려운 지방 사립대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왜 해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좀비처럼 남아 있느냐 보게 되면 어떤 출구나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법을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학이라고 거기가 거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려서 감사를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성 자체가 거의 붕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원들도 임금 체불이 수년째 되다 보니까 학교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출구가 없기 때문에 설립자나 법인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좀 빼먹느냐라는 걸 보면 기존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얻는 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빼가면서 학교는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물론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책임 문제를 물어야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대학의 생태계라든지 지역 경제 자체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상황은 학령인구가 줄고 또 앞으로 더 다가올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경희 의원님 안이 조금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드리는 게 이것을 남는 재산을 다 주자는 게 아니고 교직원 퇴직, 고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다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편입학한다든지 하는 데 지원금을 다 하고 그다음에 혹시 법인으로 출연을 할 수 있으면 출연을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그중의 30%를 국고 귀속으로 갈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예전에 우리 초·중등학교 해산장려금 주듯이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그냥 30%를 무조건 때 주자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서동용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학교는 그런 정도면 해산 명령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산하고 청산 절차 거쳐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저희가 폐교 명령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동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경영위기대학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교육부가 나서서 해산 명령을 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처리해도 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진해서 해산을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구조개혁법을 만들어서 자꾸 유인하자고 하는데요 그것 해산 명령권을 발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데 이 정도 상황까지 오기 전에 사실은 저도 살펴봤더니 2013년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산 명령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근거도 확인을 하고 임금 채불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 사분위나 이런 데 올려 가지고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이 워낙 지난하고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부분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대학도 그렇고. 그 피해가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 사회에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서동용 위원 같은…… 또 그 말씀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까마는 반복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좀 여쭙볼게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법안이 제정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잔여재산 처분 특례의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동용 위원 예.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저희가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고요. 전체 대학법인이 174개, 전문대학법인 123개 해서 총 297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전체 67개 법인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산을 한다면 잔여재산을 입법 중인 법안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하겠다는 법인을 조사한 결과 11개의 법인이 청산지원계정으로 해산을 했을 경우에 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자진 폐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대학을 폐교하려고 하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폐교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대학을 폐교하려고 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다른 경영 위기라든가 이런 건 폐교 사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만이 현재 고등교육법상의 폐교 사유가 됩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또 감사를 나가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폐교가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 또 학사 운영을 어느 정도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춰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대학이 어려워진 상태가 돼서 좀비대학이 되면 피해는 그 학교 구성원들이 결국은 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이 기존의 법하고 다른 건 기존의 법이 학교가 폐교가 되고 해산이 될 경우에는 구성원 보호 조치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용 위원 구성원 보호 조치는 모든,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도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이니까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현재 법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서동용 위원 차관님, 혹시 사립학교별로 처음에 사립학교 법인이 만들어져서 학교에다가 출연한 재산 그리고 그 이후에 재단에서 전입된 돈 즉, 출연한 재산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러니까 증명된 돈들만 쪽 뽑을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최초 출연 재산하고……

○서동용 위원 최초부터 해서 이후의, 학교법인은 어쨌든 학교에다가 법인이 들여 놓은 돈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전입금, 누적된 전입금……

○**서동용 위원** 이것을 본인들 주장 말고 증명할 수 있는 돈의 리스트 내역을 뽑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뽑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용 위원** 한번 그걸 해 보시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립대학교들이 최초 설립할 때 낸 돈하고, 그걸 빼면 대부분 재단 전입금이 거의 없었던 학교들이 많지요. 그래서 등록금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이것이 현재 재산을 만든 돈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립자가 또 법인이 얼마만큼 돈을 학교에다 내 났는지 이것은 뽑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뭔가 우리가 중간선에서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법인 해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처음에 설립 인가를 받을 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이 있을 테니까요. 그게 있고 연도별로 계속 결산을 하다 보면 법인 전입금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오늘 법안소위가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사립학교 구조개선법을 한 번 논의하고요. 잠시 후에 장애인 평생교육법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35분 남았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 저도 짧게 한마디만 줘……

○**소위원장 김영호** 일단은 강덕구 위원님이 신청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강덕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강덕구 위원** 담당국장이시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과장입니다.

○**강덕구 위원** 제가 법안을 낸 것은요 현재 사립학교법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이 안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법안을 낸 겁니다.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적극 공감합니다.

○**강덕구 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 맞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강덕구 위원** 제가 아까 대학을 얘기 안 했지만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인가, 남원시장이 저한테 왔었고 그리고 강진인가 어디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대학이 폐교됨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지역의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 상황이 어렵다,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 그래서 이 구조 지원 관련된 부분에 지역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넣을 수 있나 저희들이 의원실에서 알아본 결과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개정안을, 다른 법안을 낸 겁니다. 맞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 두 번째, 지금 경영 위기라고 했을 때 이게 구조적인 경영 위기가 있고요 개별적 경영 위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2023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입학정원과 학령인구가 역전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학교의 경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 아닙니까? 구조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몇 개 대학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훨씬 더, 제가 보기에요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현재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법안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학교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출연금으로 공익재단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안과 그리고 또 해산장려금, 정경희 의원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나 이태규 의원님안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다 이렇게 한 것 인정하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덕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재단에 재산을 이렇게 귀속했을 때 재단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재 총량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현재 총량을…… 그러니까 해산 시 해산장려금 기준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득구 위원** 예.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해산 시에는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빼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퇴직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입생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다 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재산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거나 맨 처음에 재단, 처음으로 학교 법인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재단 출연을 하고 그런 부분과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까지 다 총량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것은 아닙니다.

○**강득구 위원** 아니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산장려금을 지급하자는 의미는 법인이 대학에 당초 얼마의 재산을 출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저는 서동용 위원님이나 위원님 말에 다 공감합니다. 다만 해산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다가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줘야지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래서 적기에 해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강득구 위원** 선택권을 줘야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최소한의 유인책 내지는 어쨌거나 재단의 입장을 유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쪽에서 문을 좀 열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마지막 순서인데요. 권은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인데 순서는 강민정 위원님이 먼저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질의를……

○**강민정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서 마치 현재의 사학법에 의하면 교육적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것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법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사학법 34조에 해산 사유에 보면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교육법에 학교가……

○**강민정 위원** 아니, 사학법…… 지금 대부분 사립학교잖아요, 32개인가 33개 아까 얘기하신 게. 거기에 보면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목적 달성 불가능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고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그다음에 네 번째가 파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해산명령 내린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에는 재정적인 상황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마치 이 법이 없으면 해산, 청산 이런 과정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되죠. 똑바로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그런데 보통의 사립학교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교가 폐쇄가 된 이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강민정 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사립학교법 34조 내가 읽어 봤잖아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알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제가 지금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물론 작년은 출생아 수가 25만입니다. 그렇지만 2024년부터 7년인가 10년 사이에는 이게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교육부대학경영지원과장 최용하** 예.

○**강민정 위원** 지금 캘리포니아는, 물론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상황도 다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한 저출생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해서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를 공을 들여서 거치면서 연구 중심 대학이나 교육 중심 대학이나 그다음에 기술·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시스템을 사실 완전히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착되는 데 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절박하다면 우리가 이 문제, 대학을 살리는 문제를 정리하는 게 절박하다면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그냥 알아서 죽으라고 하면 안 되고 특히 지금과 같이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면 이걸 그냥 자발적으로 재정 위기 상황에 닥친 학교들은 다 해산, 청산하라 이런 식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 대학 바글바글할 거고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아무런 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리면 지역균형발전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우리 교육부가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시적이지만 적어도 한 7년, 제 기억에는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적어도 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게 절박한 만큼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지방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이며 대학의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과 직업교육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준하에서 합병할 것 합병하고 파산 내지 해산시킬 것, 폐교할 건 폐교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로 정말…… 강득구 위원님이 지방 교육, 지방의 경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서 그 법안을 넣기 위해서 이 법 개정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 우리가 대학이 없어지는 걸 그냥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정말 지방균형발전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너무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 놓고 또 이제는 마음대로 알아서 죽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등교육 정책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절박함과 위중함을 생각해서 우리 고등교육을, 대학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가 깃발 들고 전문가들 모으고 관계자, 이해당사자들 모으고 해서 어렵겠지만 어떤 개혁안을 만들고 그 개혁안에 기초해서 해산하고 그때는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저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봐

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로 그냥 돈 주고 대학 그냥 알아서 망하고 망할 것 망하게 두는 방식은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저는 계속 심사를 위해서 교육부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교육부가 깃발 들고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교육부가 깃발 들고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학은 망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게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고.

그러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경쟁력이 없어서 이용하는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교육 기능이 상실된 기관들을 정리해주는, 구조개선을 해 주는 이 역할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사립학교법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이 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존의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구조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취약점 또 제도적인 취약점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 이게 여러 번 논의가 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임시이사 제도가 있지만 임시이사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나마 이사회 정상화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임시이사 제도화를 통해서 법인 정상화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과 관련해서는 해산과 청산에 대한 설립자나 법인 주체의 의지나 시간표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아무런 의견 반영 또 이해관계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사각 지점 때문에 법적인, 일종의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기존의 법과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컨대 이런 거지요. 우리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지 않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지 않아도 기존 법제도로 전세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금 청구하고 제도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이 없는 또는 도망다니는 가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입법 정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립학교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그런 취지의 법률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드러나도록 기존 제도의 사각과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심사 때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나 고등교육법상에 구조개선이냐 해산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임시이사 제도, 자진 해산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왜 안 되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한동안에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례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교육 개혁을 한데, 3대 개혁에 넣고 그 개혁 과제 중에 대학 개혁을 또 핵심 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그 개혁 과제 중에 구조 개혁에 대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규제 개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재정 개혁이 또 있습니다. 고특회계 만들어 가지고 또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양을 하고 또 글로벌 대학처럼 확실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꼭 이 법안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법적인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지적이 다 타당하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서동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더 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영호** 예,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서동용 위원** 예, 짧게 할게요.

제가 사립학교법을 놔두고 왜 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질문 취지가 있었잖아요? 기존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오히려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 이런 뭐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사립학교 최초 출연금이나 이후에 재단 전입금 등을 좀 뽑아 주시는데 객관적으로 증거로써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들 주장 말고 실제로 증거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까요? 돈을 현금 갖다 주지는 않았을테니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것을 찬찬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통장 이체내역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현실적으로 설립 단계에서부터 쪽 뽑기는, 모든 대학을 뽑기는 어렵거든요. 의원실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 몇 개 대학 이런 샘플링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몇 개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자료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대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것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실하고 좀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소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서 11항까지는 계속 심사로 분류하고요,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유기홍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두 법안도 지난 소위 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쪽에는 지난 소위 때 논의사항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장애인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계를 가져가자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통합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라는 의문이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할 때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하고 확실한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실효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조금 더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중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통합교육으로 가는 길에는 사실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당시 교수님의 말씀도 동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통합교육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봐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이게 장애인이나 또 가족들은 아직까지 우리 교육현장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교육 내에서도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거든요, 통합교육 속에 특수학급이 지금 있다는 것이. 저는 같은 차원으로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법이 있지만 실제로 평생교육법이 장애인들의 참여율을 보면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근거가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지난 소위에서 여쭙았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여쭙보겠어요.

차관님, 교육부가 2021년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그때는 모르고 계셨는데요, 찾아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서동용 위원 정책연구용역의 활용결과 보고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부’ 하는 표현들이 있지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용역 결과를 교육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쪽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요, 과거에는 입장이 없었다가 이제 입장을 정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마치 교육부가 국회를 농락한 것 같은 느낌마저도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지난 2020년 12월부터 21년 8월까지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맞고요,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 결과에도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처의 입장을 정할 때 물론 연구용역 결과 그게 많은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청회도 해서 의견을 들었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현행의 체계 내지는 그 안에서 역량을 좀 집중해 가지고 지원할 문제이지 이것을 별도의 체계로 따로 뉘 가지고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네요.

2017년도에 평생학습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조문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어떠한지, 법 개정 이후 평생학습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등등을 여쭙봤었는데 지난번에 현황 파악,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조금 진전…… 물론 지금 와서 데이터를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지표상으로 나왔는데,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별도로 지정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도 금년도부터 신설을 해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은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동용 위원 아니 차관님, 그것은 지난번에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래,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냐고요. 기존의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서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한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타당성을 따지려면…… 그런데 차관님은 평생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체계에서 가는 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왜 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느냐, 이것은 기존의 법체계의 문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를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도 했고 뭐도 했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별도의 법체계라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국가 차원의 센터, 시도 단위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이 조직을 별도로 가져가고 거기에 장애인에 특화된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도 새

로 만들고 하는 방안의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체계를 바꾸자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통합교육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그 체계가 별도의 학교를 만드는, 특수학교를 새로 만드는 체계가 아니고 기존의 체계에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이 참여율이 저조한데, 물론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접근성이 부족한 건지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건지 맞춤형 교육이 안 되는 건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존의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좀 소외되고 있고 접근도 잘 안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이 기존의 체계에서 프로그램이나 접근성이나 이것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을 뜯개 가지고 별도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 최소한 그 말씀을 하시려면 왜 법을 바꿨더니 오히려 참여율이 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계속 말씀만 하세요. 더욱이 제가 보기에선 종래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을 찬성하셨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전혀 설득이 안 돼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이게 저희가 기존에 왜 성과가 떨어지느냐에 대한 아주 100% 답변드릴 수 있는 에비던스(evidence)는 아니지만 국가특수교육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학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의 가장 많은 포션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불충분하다’ 그리고 교육 장소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마지막에 ‘경제적 부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교육 관리하거나 아니면 공급하는 이 체계가 지금은 안 맞고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압도적으로 줬다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현 체계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서동용 위원 저는 오히려 차관님이 그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봐, 그러니까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고 전달 체계가 필요한 것이지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 완전히 반대의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데 30대 여성에게 주어지는 어떤 교육이 있을 수 있고 40대 남성에게 주어지는 교육, 70대 누구에게 주어지는 교육이 쪽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이 중에 하나, 원 오브 them(one of them)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불평등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 정도별, 장애 종류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봐, 그러니까 별도의 전달 체계가 필요한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여서요 제발 장애인 평생교육을 30대 여성에 대한 어떤 교육과 같은 의미로, 같은 무게로 받아들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강득구 위원님.

오늘은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질문하시네요.

○강득구 위원 차관님, 올해 3월 말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알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혹시 담당 과장이나 국장 계시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여기……

○강득구 위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평생교육법 말씀입니까?

○강득구 위원 예,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제 얘기 들으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추진체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랑 읍면동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우리 과장, 제 얘기마저 들어요.

○교육부장관학생평생교육팀장 이양주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교육과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은……

○강득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그리고 시군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을 동 단위까지 추진체계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지역에 맞게 콘텐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접근성도 그만큼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부에서 고민해야 될 접근성과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관도 동의하시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저는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도 제일 큰 게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있다고 해서 이 사안들이 나아지고 이런 건 물론 관심은 더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예를 들면 평생교육은 통합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 평생 관련된 국가 단위의 책임을 국립특수교육원에 한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 아닌가요? 우리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과 비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체계 속에서 큰 틀에서 같이 가는 게 맞다.

아까 우리 학교 얘기했지만 분명히 학교 안에 예를 들면 통합반이 있지요. 그것은 결국 장애인 교육도 그렇고 또 평생교육도 더불어 함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여전히 평생 교육은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관련된 예산이 지금 1%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이고 평생학습도시 집중진흥지구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세워지잖아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강득구 위원** 우리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기초지자체와 교육부랑 연계해서 평생학습도시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평생교육들이 좀 더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부의 중심 어젠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부탁입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공감하고 아무튼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 오늘 예를 들면 강민정 위원님이 있고 서동용 위원님이 있지만 다 민주당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 50건 중에 1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대학생 이자, 취업……

○**교육부차관 장상윤** ICL.

○**강득구 위원** 예, 그것 말고는 다 개별적 의원들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절대로 당론, 이런 당론으로 가는 건 있지만……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지 이걸 민주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을 긋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아니,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동용 위원** 그 이야기를 왜 해.

○**강득구 위원** 아니, 이주호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법안을 심사를 받을 때 당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요.

○**강득구 위원**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장애인 평생교육법안도 이 정도로 좀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오는 7월 26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같은 형식의 법안소위를 한번 열자고 우리 간사님께 제안을 했고요.

○**서동용 위원** 따로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영호** 예?

○**서동용 위원** 따로 좀 상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영호** 따로요?

예.

○**서동용 위원** 7월 회기가 되면 우리 당에서는 지금 7월 20일까지인가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회기 중이 아니라도 법안소위는 열 수 있으니까 회기와 관계없이 열자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 예, 그런데 따로 한번 좀 상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7월 중에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드리고요.

○**서동용 위원** 저희가 그전에 법안소위에서 다음 법안소위의 날짜를 잡고 이래 본 적이 없어서……

○**소위원장 김영호** 이것은 양 간사가 법안소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서동용 위원** 조금 천천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신 거지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상윤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영호
서동용	이태규	조경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전문위원	천우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장상윤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정책기획관	김정연			